#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92

발의연월일: 2024. 7. 4.

발 의 자:서영교・이해식・박지원

김남근 • 한병도 • 김병기

김종민 • 민병덕 • 허 영

이수진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

우리나라의 이자제한 제도는 사채시장의 양성화 및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규제를 목적으로 합법적인 대부업에는 고금리의 보장 필요성에따라 이원화하여 사적 거래에 있어 미등록대부업자 등 일반인은 「이자제한법」에 따라 연 25퍼센트를,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연 10 0분의 27.9 이하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, 제한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받았을 경우 그 초과한 이자 부분은 각각 무효로 하고 있음.

그러나 당초 입법 목적대로 사채시장의 양성화는 두드러졌지만 고 금리와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인하여 개인 파산 및 자살 증가 등 사회 적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고, 많은 대부업자들은 제한금리를 초과하 는 불법 폭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 만 무효로 하고 있고 처벌이 미약하여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, 이로 말미암아 낮은 신용등급으로 사채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이 자립할 수 없을 정도의 고금리에 허덕이게 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.

이에 이자제한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이자가 있는 모든 금전대 차의 계약상의 이자 제한에 대해서는 「이자제한법」의 적용을 받도 록 하고,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하향 조정하며,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 써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사회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- 가.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현행 "연 25퍼센트"에서 "연 15퍼센트"로 하향 조정함(안 제2조제1항).
- 나.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고, 이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가능하게 하였으며, 그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관한 약정을 포함한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여, 채권자가 그 원본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함(안 제2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).
- 다. 이자 있는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에 대해서는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미등록대부업자를 포함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금융업 및 대부업도 이 법에 따른 이자 제한을 받게 됨(안 제7조).

라.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, 징역형과 벌금형 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제2항 신설 및 제8조제3항).

#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39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자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"연 25퍼센트"를 "연 15퍼센트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-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고, 그 최고이자율의 2 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관한 약정을 포함한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한다.
- ④ 채무자가 제3항에 의하여 무효인 약정에 따라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⑥ 채권자가 제3항에 의하여 무효인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에 따라 원본을 대차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3조 중 "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"를 "그 이자에 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한다"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적용범위) 이 법은 이자가 있는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한다.

②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적용례)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
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 산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했

제2조(이자의 최고한도) ①금전대 제2조(이자의 최고한도) ①-----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 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
- ② (생략)
-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 서 정한 최고이자율를 초과하 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.

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 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 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, 원 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
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<신 설>

개 정 안

-----연 15퍼센트-----

-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 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고, 그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관한 약정 을 포함한 금전대차에 관한 약 정 전부를 무효로 한다.

④ 채무자가 제3항에 의하여 무효인 약정에 따라 이자를 임 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반환 을 청구할 수 있다.

<삭 제>

⑥ 채권자가 제3항에 의하여

제3조(이자의 사전공제) 선이자를 저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 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 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 당한 것으로 본다.

제7조(적용범위) 다른 법률에 따 전 인가·허가·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「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8조(벌칙) ① (생 략) <u><신 설></u>

② <u>제1항</u>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(倂科)할 수 있다.

무	효인	금	선전대	개차	에	관형	}	약정
에	叫:	라	원본	을	대치	· 한	경	우에
<u>는</u>	ユ	반	한을	청-	구할	· 수	없	<u>다</u> .
132	돈(이	자의	니시	·전국	공제	)		
			ユ	이지	]-에	관형	한	약정
전	부를	- 무	효료	<u>.</u> 힌	나.			
— 373	조(적	용부	넘위)	) 0]	   법	은	0]	<u> </u>
								정에
대	하여	적	용한	<u></u> 난다.				
		·						

제8조(벌칙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여 이자 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-----